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900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5.

발 의 자 : 윤준병·김병주·박용갑

전용기·안호영·이춘석

박지원·박희승·김의겸

박범계·김동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 법무부 예규인 「보관금품 관리지침」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소지·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·관리,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.

이로 인해 수용자가 과도한 고액의 영치금을 교정시설에 반입·보관하거나 사적 자금 운용 및 수시 출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, 교도관들이 잦은 고액 입·출금 및 금융 업무에 매달려 정작 본연의 수용·계호 업무와 교정행정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,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·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·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,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.

제안이유

가.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,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, 초과금액에 대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·보관하도록 규정함(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나.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,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).

다. 보관금은 음식물·물품 구매, 의료비, 소송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하여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제목 중 “휴대금품”을 “휴대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휴대금품”을 “휴대품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휴대금등의 보관 등)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(이하 “보관금”이라 한다)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.

1.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
2.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품(이하 “전달금”이라 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·보관한다. 다만, 의료비 지출, 벌금 납부 등 보관금 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두고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소장은 보관금이 초과된 수용자에게 보관금 초과를 안내한 후 해당 수용자에 대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보관금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때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보관금의 사용 및 출금 제한) ① 수용자는 보관금을 음식물 또는 물품 구매, 의료비 지출, 소송비용 지출 등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.

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보관금의 출금 또는 외부 이체를 요구하는 등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금 출금의 허용 범위, 절차 및 횟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제1항 본문 중 “제25조”를 “제25조 및 제25조의2”로, “휴대금품”을 “휴대품 및 보관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5조(휴대금품의 보관 등) ① 소장은 수용자의 <u>휴대금품</u> 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. 다만, 휴 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 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 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5조(휴대품의 보관 등) ① -- ----- <u>휴대품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2(휴대금등의 보관 등) ① <u>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(이하 “보관 금”이라 한다)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.</u> 1. <u>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</u> 2.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품(이하 “전달금”이라 한다) ②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<u>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는 대통령</u>

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·보관한다. 다만, 의료비 지출, 벌금 납부 등 보관금 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두고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소장은 보관금이 초과된 수용자에게 보관금 초과를 안내한 후 해당 수용자에 대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보관금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)

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

제27조(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)

① -----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29조(보관금품의 반환 등)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(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) 보관품을 보관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때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2(보관금의 사용 및 출금 제한) ① 수용자는 보관금을 음식물 또는 물품 구매, 의료비 지출, 소송비용 지출 등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.

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보관금의 출금 또는 외부 이체를 요구하는 등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관금 출금의 허용 범위, 절차 및 횟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보관금품의 반환 등) ① -----제25조 및 제25조의2에-----
-----휴대품 및 보관금을-----
-----.

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